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37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최은석・이종욱・강대식

이상휘 · 김소희 · 조정훈

주호영 • 이인선 • 구자근

박성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.

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, 주택자금,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'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'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

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, 계약형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동일함(단, 운용대상자산은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)(안 제91조의18제3항 신설).

- 나.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금액을 추징함(안 제91조의18제8항 개정).
- 다.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된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(안 제91조의18제14항 신설).
- 라.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봄(안 제91조의18제15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73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 고.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.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 또는 제2항을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"로, "제3항 제3호"를 각각 "제4항제3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"를 "3년이 되는 날(아동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의 경우 아동이 19세가 되는 날로 한다) 전에 계약을 해지 (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아동이 19세가 되는 날 전에 인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"를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"로. "제5항부터 제7항"을 "제6항부터 제8항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 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제9항"을 "제10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 (종전의 제11항) 중 "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를 "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이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(제3호 의 경우 나목에 한정한다)을 모두 갖춘 계좌(이하 이 조에서 "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라 한다)에서 19세가 되는 날까지 받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- ④ 거주자가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경우 그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⑤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본다.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일은 19세가 되는 날로 한다.

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중 "제98조의18제8항"을 "98조의18제9항"으로 하고, 제54조 중 "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6항"을 "제91조의18제5항부터 제7항"으로 한다.

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1조제2항 중 "제91조의18제3항제3호"를 "제91조의18제4항제3호"로 한다.

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1항 중 "제91조의18제1항·제2항·제3항(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)·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"를 "제91조의18제1항·제2항·제4항(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)·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91조의18제3항제3호"를 "제91조의18제4항제3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91조의18제3항제5호"을 "제91조의18제4항제5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91조의18제7항"을 "제91조의18제8항"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5항 중 "제91조의18제8항"을 "제91조의18제9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근로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제91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자가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1조의18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한 자가 제91조의18제15항에 따라 제9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된 경우 종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기간은 불산입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	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
에 대한 과세특례)	에 대한 과세특례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
	고,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
	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이
	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	요건(제3호의 경우 나목에 한정
	한다)을 모두 갖춘 계좌(이하 이
	조에서 "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
	계좌"라 한다)에서 19세가 되는
	날까지 받는 이자소득등의 합계
	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
	<u>지 아니한다.</u>
<u>③</u> ~ <u>④</u> (생 략)	$\underline{4} \sim \underline{5}$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
<u>⑤</u>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	<u>⑥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
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	
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	
일을 기준으로 하여 <u>제3항제3호</u>	<u>제4항제</u>
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	<u> 3ই</u>
득등에서 <u>제3항제3호</u> 각 목의 재	<u>제4항제3호</u>
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	

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.

⑥ (생략)

①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<u>3년이</u>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(계좌보유자의 사망·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과세특례 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 하여야 한다.

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				
<u>®</u>				
3년이				
되는 날(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				
계좌의 경우 아동이 19세가 되는				
날로 한다) 전에 계약을 해지(아				
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				
아동이 19세가 되는 날 전에 인				
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			
<u>⑨</u>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				
종합자산관리계좌				

⑨ (생략)

- ①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

<u>⑩</u> (생 략)

<신 설>

<u>제6항부터 제8항</u>			
<u>.</u>			
⑪ (현행 제9항과 같음)			
<u> </u>			
,			
◎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			
종합자산관리계좌			
◎ (현행 제12항과 같음)			
④ 거주자가 「아동복지법」 제			
4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적			
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			
좌에 납입한 경우 그 보호자적립			

<신 설>

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
- 제25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① (생략)
 - ②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4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 치)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 한 경우에는 제91조의18제4항부 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일부개정법률 부칙

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.

⑤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 터 해당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본다.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가입일은 19세가 되는 날로 하다.

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
제25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제91조의18제9항-----

제54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

----- 제91조의18제5항부터

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
- 제21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제21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① (생 략) ① (현행과 같음)
 -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
- 제17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
 - ① 제91조의18제1항·제2항·제3항(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)·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·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.
 -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 -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91조의18제4항제3호
② <u>제91조의18제4항제3호</u>
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
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
일부개정법률 부칙
제17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
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
① <u>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</u>
4항(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
제외한다) • 제5항부터 제7항까
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
② 제91조의18제4항제3호
③ 제91조의18제4항제5호

⑤ <u>제91조의18제8항</u> 의 개정규정	⑤ <u>제91조의18제9항</u>
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	
부터 적용한다.	<u>.</u>